#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희망1자산대부관리(유)

**2. 조치일** : 2021. 4. 5.

**3. 조치내용**

| 대상 | 내 용 |
|---|---|
| 기관 | 개선사항 2건 |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채권매각 관련 내부통제 기준 미운영**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7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채권매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관성 있고 투명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매각채권 사후관리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 다 음 >

2016.7.21. OOOOOOOO㈜에게 매각한 OOO 등 채무자 3명의 개인회생 채권과 관련하여 2017.3.27.~2020.6.10. 기간 중 법원이 동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변제금(총 2,473,087원)을 OOOOOOOO㈜가 아닌 동사로 잘못 입금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고 이자수익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2020.6.26. OOOOOOOO㈜에 전액 반환하였음)

### ⑵ 전화추심 등 채권추심활동 관리·감독 미흡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29조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일체의 추심활동 상황이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직원이 불법·부당한 추심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추심업무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20.9.17.) 현재 추심업무담당자가 방문추심 등 외근 시 개인휴대전화를 추심에 이용하고 있는데도 통화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불법·부당한 추심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소속 추심직원으로 하여금 통화내용 녹취가 가능한 법인 휴대전화를 채권추심에 이용하도록 하고, 법인 휴대전화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화기록 및 내용을 점검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